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기어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2. 5. 17
- 나. 제출자 : 사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2. 5. 17(의안 제 26호)
- 라. 심사일자 : 제65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2.5.23)

2. 제안이유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현행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기간만료 30일전에서 20일전까지 연장 신청토록 완화(안 제5조 제2항)
- 나.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하나, 환불하는 예외규정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구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신설(안 제8조제3항제3호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건은 규제 사무 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정으로 시민 편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의결